# 일 본 세 리 사 법 (2008년 번역본)

2008. 11. .

한국세무사회부설 한국조세연구소

# [목차(장)·(조)]

제1장 총 칙 (제1조 ~ 제4조)

제2장 세리사시험 (제5조 ~ 제17조)

제3장 등 록 (제18조 ~ 제29조)

제4장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제30조 ~ 제43조)

제5장 세리사의 책임 (제44조 ~ 제48조)

제5장의2 세리사법인 (제48조의2 ~ 제48조의21)

제6장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제49조 ~ 제49조의21)

제7장 잡 칙 (제50조 ~ 제57조)

제8장 벌 칙 (제58조 ~ 제65조)

# [제·개정 연혁]

제정 1951. 6. 15. 법률 237호 개정 1952. 6. 28. 법률 216호 개정 1952. 7. 31. 법률 262호 개정 1953. 8. 1. 법률 164호 개정 1953. 8. 1. 법률 165호 개정 1954. 5. 13. 법률 95호 개정 1955. 8. 10. 법률 155호 개정 1956. 6. 30. 법률 165호 개정 1960. 6. 30. 법률 113호 개정 1961. 6. 15. 법률 137호 개정 1961. 6. 17. 법률 145호 개정 1962. 4. 2. 법률 67호 개정 1962. 9. 15. 법률 161호 3. 31. 법률 개정 1965. 36호 개정 1966. 6. 23. 법률 85호 개정 1967. 6. 12. 법률 36호 개정 1968. 4. 20. 법률 21호 개정 1970. 3. 28. 법률 8호 개정 1971. 6. 4. 법률 101호 개정 1978. 6. 23. 법률 82호 개정 1980. 4. 14. 법률 26호 개정 1981. 6. 2. 법률 64호 개정 1983. 12. 2. 법률 78호 개정 1985. 6. 28. 법률 86호 개정 1986. 5. 23. 법률 66호 개정 1988. 12. 30. 법률 108호 개정 1988. 12. 30. 법률 110호 개정 1993. 11. 12. 법률 89호

개정 1995. 5. 12. 법률 91호 개정 1997. 3. 28. 법률 9호 개정 1999. 7. 16. 법률 87호 개정 1999. 7. 16. 법률 102호 개정 1999. 12. 8. 법률 151호 개정 1999. 12. 22. 법률 160호 개정 2000. 4. 26. 법률 개정 2001. 6. 1. 법률 38호 개정 2001. 11. 28. 법률 129호 개정 2002. 11. 29. 법률 118호 개정 2002. 12. 6. 법률 138호 개정 2002. 12. 13. 법률 152호 개정 2003. 6. 6. 법률 7. 30. 법률 131호 개정 2003. 개정 2004. 6. 2. 법률 66호 개정 2004. 6. 2. 법률 76호 개정 2004. 6. 9. 법률 87호 개정 2004. 6. 18. 법률 124호 개정 2004. 12. 1. 법률 147호 개정 2004. 12. 1. 법률 150호 개정 2004. 12. 3. 법률 154호 개정 2005. 7. 15. 법률 83호 (시행 2007. 4. 1., 2005. 10. 1.) 개정 2005. 7. 26. 법률 87호 개정 2006. 6. 2. 법률 (시행 2008. 12. 1.) 개정 2007. 6. 27. 법률

(시행 2007. 12. 26.)

#### 제1장 총 칙

제1조 (세리사의 사명) 세리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 서, 독립된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이념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부응하여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 된 납세의무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 다.

제2조 (세리사의 업무) ① 세리사는 타인의 요구에 응하 [영] 제1조, 제1조의2 여 조세(인지세, 등록면허세, 관세, 법정외보통세(지방세법 【칙】제1조 (1950년 법률 제226호) 제13조의3 제4항에 규정하는 도 《개정》 1999 법률 87호 부현(道府縣)법정외보통세 및 시정촌(市町村)법정외보통세 《개정》 1999 법률 160호 를 말한다.), 법정외목적세(동항에 규정하는 법정외목적세 《개정》2002 법률 152호 를 말한다)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 다.)에 관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으 로 하다.

1. 세무대리(세무관공서(세관관서를 제외하고, 국세불복심 판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조세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의 규정에 근 거한 신고, 신청, 청구 또는 불복신청(이들에 준하는 것으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주세법(1953년 법률 제6호) 제2장의 규정에 관련된 신고, 신청 및 불복 신청을 제외한다. 이하「신고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또는 당해 신고 등 또는 세무관공서의 조사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관공서에 대하여 하는 주장 또는 진술에 관하 여 대리하거나 또는 대행하는 것(다음 호의 세무서류의 작 성에 그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세무서류의 작성(세무관공서에 대한 신고 등에 관련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불복신청서 기타 조세에 관한 법 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세무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그 작성에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 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

식으로 만든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에서 같다.)을 작성 하는 경우의 당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신고서 등」이라 한다.) 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3. 세무상담(세무관공서에 대한 신고 등, 제1호에 규정하 는 주장이나 진술 또는 신고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조세 의 과세표준 등(국세통칙법(1962년 법률 제66호) 제2조 제6호 가목(イ)부터 바목(ヘ)까지 게기하는 사항 및 지방 세에 관련된 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담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세리사는 전항에 규정하는 업무(以下 「세리사업무」 라 한다.) 외에, 세리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세리사업무에 부수해서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 의 기장의 대행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업으로 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률에서 그 사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 제 한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세리사는 다른 세리사 또는 《추가》 2001 법률 38호 세리사법인(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세리사법인을 말한다. 다음 장, 제4장 및 제5장에서 같다.)의 보조자로서 이 항 들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2조의2 ① 세리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 《추가》 2001 법률 38호 에서 보좌인으로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두하여 진술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진술은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 본인이 한 것 《추가》 2001 법률 38호 으로 본다. 단,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동항의 진술을 즉시 취소하거나 또는 경정한 때는 그렇지 않다.

제3조 (세리사의 자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영】제1조의3 는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갖는다. 단,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에 관한 사무 또는 회계에 관한 사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 산하여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한다.

- 1. 세리사시험에 합격한 자
- 2. 제6조에 정하는 시험과목 전부에 대하여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시험이 면제된 자
- 3. 변호사(변호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 4.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 ② 공인회계사법(1948년 법률 제103호) 제16조의2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률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인회계 사로 본다.

第4조 (결격조항)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1999 법률 151호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리사가 될 자격이 없다. 《개정》2000 법률 49호

- 1. 미성년자
- 2.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
-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4.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 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 지 않은 자
- 5.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에 처한 자 또는 국세범칙단속법(國稅犯則取締法)(1900년 법률 제67호)(지방세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관세법(1954년 법률 제61호)(톤세법(1957년 법률 제37호) 및 특별톤세법(1957년 법률 제38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련하는 통고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또는 그 통고의 뜻을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령 및 이 법률 이외의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개정》1999 법률 151호 《개정》2000 법률 49호 《개정》2001 법률 38호 《개정》2003 법률 67호 《개정》2004 법률 66호

- 7. 징계처분에 의하여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자로서, 당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8. 국가공무원법(1947년 법률 제120호), 국회직원법(1947 년 법률 제85호) 또는 지방공무원법(1950년 법률 제26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9. 변호사법(1949년 법률 제205호) 또는 외국변호사에 의 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1986년 법률 제 66호),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2000년 법률 제49호), 사 법서사법(1950년 법률 제197호), 행정서사법 (1951년 법 률 제4호), 사회보험노무사법(1968년 법률 제89호) 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63년 법률 제152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변호사회로부터의 제명, 공인회계사의 등록말소. 변리사. 사법서사 또는 행정서사 의 업무금지, 사회보험노무사의 실격처분 또는 부동산감정 사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러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이 법률들의 규정에 의 하여 다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자를 제외한다.)
- 10. 세리사의 등록이 거부된 자 중 제22조 제4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 여 세리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이러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제2장 세리사시험

제5조 (수험자격)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조의3, 제2조, 세리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다음에 게기하는 사무 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 【최】제1조의3 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

가. 세무관공서에서의 사무 또는 기타 관공서에서의 국세 《개정》 2001 법률 38호 (관세, 톤세 및 특별톤세를 제외한다. 제24조, 제36조, 제 《개정》 2002 법률 138호 41조의3 및 제46조를 제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지방세 《개정》 2003 법률 67호

제3조. 제5조

《개정》1999 법률 160호

에 관한 사무

나. 행정기관에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회계검사, 금융검사 《개정》 2007 법률 96호 또는 회사 기타 단체의 경리에 관한 행정사무

다. 은행, 신탁회사(신탁업법(2004년 법률 제154호) 제3 조 또는 제53조 제1항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보험 회사 또는 특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업무를 영위하 는 법인에서의 정령으로 정하는 대부 기타 자금의 운용(대 부처의 경리에 관한 심사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라. 법인(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다.)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회계에 관한 사무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마.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인 또 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법인의 업무의 보조사무

바.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 률상 자격을 가진 자의 업무

- 2. 학교교육법(1947년 법률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이들 학교에서 법률 학 또는 경제학을 수학한 자 또는 동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을 수학한 자
- 3.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 4. 공인회계사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시험 의 단답식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당해 시험이 면 제된 자(당해 시험의 시험과목 전부에 대하여 시험이 면제 된 자를 포함한다.)
- 5. 국세심의회가 법률학 또는 경제학에 관하여 전2호에 게기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 자
- ② 전항 제1호에 게기하는 사무 또는 업무의 2 이상에 《개정》 2001 법률 38호 종사한 자는 이들 사무 또는 업무의 2 이상에 종사한 기 《개정》 2003 법률 67호 간을 통산한 경우에 그 기간이 3年 이상이 될 때는 세리 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 게기하 《개정》 1999 법률 160호

《개정》 2004 법률 154호

- 5 -

는 사무 또는 업무와 유사한 사무 또는 업무로서 국세심 《개정》 2001 법률 38호 의회의 인정을 받은 사무 또는 업무는 동호에 게기하는 《개정》 2003 법률 67호 사무 또는 업무로 본다.

④ 제1항 제5호 및 전항에 규정하는 국세심의회의 인정 《개정》 1999 법률 160호 의 절차에 관하여는 재무성령으로 정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제6조(시험의 목적 및 시험과목) 세리사시험은 세리사가 되는 데 필요한 학식 및 그 응용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 부를 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에 정하는 과목에 관하여 행한다.

1. 다음에 게기하는 과목(가목에서 마목까지 게기하는 과 목에 있어서는 국세통칙법 기타 법률에 정하는 당해 과목 에 관련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세법에 속하는 과 목」이라 한다.) 가운데 수험자가 선택하는 3科目. 단. 가 목 또는 나목에 게기하는 과목 가운데 1과목은 반드시 선 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한다.

가. 소득세법

- 나. 법인세법
- 다. 상속세법
- 라. 소비세법 또는 주세법 중 1과목
- 마. 국세징수법

바. 지방세법 중 도부현민세(道府縣民稅)(도민세를 포함 한다.) 및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稅)(특별구민세를 포함한 다.)에 관한 부분 또는 지방세법 중 사업세에 관한 부분 중 1과목

사. 지방세법 중 고정자산세에 관한 부분

2. 회계학 중 부기론 및 재무제표론의 2과목 (이하「회계 학에 속하는 과목」이라 한다.)

제7조(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① 세리사시험에 있어서 [영] 제6조 시험과목 중 일부과목에 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 《개정》2001 법률 38호 상의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그 후 에 시행하는 세리사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 제한다.

② 세법에 속하는 과목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1항 제1호에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학교교육법제104조에 규정하는 학위를 말한다. 다음 항 및 다음 조제1항에서 같다.) 또는 동법 제10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학위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여받은 자로서 세리사시험에서 세법에 속하는 과목중 1과목에 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얻은 자가, 당해 연구가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것이라는 국세심의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당해 1과목 이외의 세법에 속하는 과목에 관하여, 전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추가》2001 법률 38호 《개정》2002 법률 118호 《개정》2007 법률 96호

③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1항 제2호에서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또는 학교교육법 제10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학위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여받은 자로서세리사시험에서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중 1과목에 관하여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가, 당해 연구가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것이라는 국세심의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험과목 중 당해 1과목 이외의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것으로 본다.

《추가》2001 법률 38호 《개정》2002 법률 118호 《개정》2007 법률 96호

④ 세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이었던 과목 중 시험과목이 없어진 것에 관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목은 전조 제1호에 게기되어 있는 시험과목으로 본다.

《추가》2001 법률 38호

⑤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국세심의회의 인정절차에 관하여는 재무성령으로 정한다.

《추가》 2001 법률 38호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세리사시험에서 당해 각호에 게기하는 과 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칙】제2조의2, 제2조의3《개정》1999 법률 160호

1. 대학 등(학교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나 고등전문 《개정》 2001 법률 38호 학교 또는 동법 제10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대학이 나 대학원에 상당하는 교육을 행하는 과정이 설치된 교육 시설을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에서 세법에 속하는 과 목 등의 교수, 준교수(准敎授) 또는 강사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 및 세법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관하여 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 《개정》2003 법률 67호 《개정》2005 법률 83호 《개정》2007 법률 96호
- 2. 대학 등에서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의 교수, 준교수 (准敎授) 또는 강사의 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자 및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등에 관한 연구 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관하여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 3.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시험에 합 격한 자 또는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 계사시험의 논문식에 의한 시험에서 회계학 과목에 관하 여 공인회계사 · 감사심사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성적 을 얻은 자에 관하여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 4. 관공서에서의 사무 중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소비세나 주세의 부과 또는 이들 국세에 관한 법률의 입 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에 관한
- 5. 관공서에서의 국세에 관한 사무 중 전호에 규정하는 사 무 이외의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에 관한 것
- 6. 관공서에서의 사무 중 도부현민세(道府縣民稅)(도민세 를 포함한다.),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稅)(특별구민세를 포함 한다.), 사업세나 고정자산세의 부과 또는 이들 지방세에 관한 법률의 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지방세에 관한 것
- 7. 관공서에서의 지방세에 관한 사무 중 전호에 규정하는

사무 이외의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지방세에 관 한 것

- 8. 제6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5 년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 9. 제7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0 년 이상이 되는 자에 관하여는 세법에 속하는 과목
- 10. 다음에 게기하는 자로서, 관공서에서의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직 또는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직으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이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자 중, 국세심의회가 지정한 연수(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연수 중, 국세심의회가 세리사시험의 시험과목 중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에 관하여 전조제1항에 규정하는 성적을 얻은 자가 갖는 학식과 동등한 정도의 학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를 수료한 자에 관하여는 회계학에 속하는 과목

가. 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3년 이상이 되는 자

나. 제7호에 규정하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8年 이상이 되는 자

다. 가목에 규정하는 기간을 통산한 연수의 23분의 28에 상당하는 연수와 나목에 규정하는 기간을 통산한 연수를 합계한 연수가 28년 이상이 되는 자

② 전항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하는 직 또는 사무 중, 시험의 면제과목을 같이하는 직 또는 사무의둘 이상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직 또는 사무에 관하여 이들 호에 규정하는 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비율로써 연수를 환산하여 이들 직 또는 사무의 둘 이상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한 경우에, 그 기간이 10年 이상이 되는 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세리사시험에서 당해 과목의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에 제1호 또는 제8호나 제9호에

규정하는 직 또는 사무에 종사한 자에 관하여는 당해 직 또는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세법에 속하는 과목 중 국세 에 관한 것 또는 지방세에 관한 것 중 어느 하나를 면제 하는 다른 사무에 종사한 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수험수수료 등) ① 세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영】제6조의2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 의 수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고 《추가》 2001 법률 38호 자 하는 자는 실비를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험수수료는 세리사 《개정》 2001 법률 38호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하지 않는다.

제10조(합격의 취소 등) ① 국세심의회는 부정한 수단의 《개정》1999 법률 160호 로 세리사시험에 응시하거나 또는 응시하고자 한 자에 대《개정》2001 법률 38호 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또는 합격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국세심의회는 제7조 제2항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 2001 법률 38호 인정 또는 제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결정 한 후, 당해 인정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 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 인정 또는 면제를 받은 자임이 판 명된 때는 그 인정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국세심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에 《개정》1999 법률 160호 대하여, 정상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리사시 《개정》 2001 법률 38호 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는 당해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수여한다. ② 시험과목 중 일부의 과목에 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에게는 그 기준 이상의 성적 을 얻은 과목을 통지한다.

【칙】제4조 《개정》2001 법률 38호

제11조 (합격증서 등) ① 세리사시험험에 합격한 자에게 【영】제6조

제12조 (시험의 집행) ① 세리사시험은 국세심의회가 행 《개정》1999 법률 160호 하다.

② 세리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행한다.

제13조 (시험의 세목)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세리사 【최】제2조 ~ 제7조 시험(제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포함한 《개정》1999 법률 160호 다.)의 집행에 관한 세목에 관하여는 재무성령으로 정한 다.

제14조 내지 제17조 (삭제)

#### 제3장 등 록

제18조 (등록) 세리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세리사가 《전개》2001 법률 38호 되기 위해서는 세리사명부에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사항 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세리사명부) ① 세리사명부는 일본세리사회연합 【칙】제9조, 제14조의2 회에 비치한다.

- ② 세리사명부의 등록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행한다.
- ③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때 라 제1항의 세리사명부를 자기디스크(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확실히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을 포 함한다. 제41조 및 제48조의 10에서 같다.)로써 만들 수 있다.

《추가》2001 법률 38호

제20조 (변경등록) 세리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칙] 제10조 록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의 신청)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최] 제11조

하고자 하는 자는 동조에 규정하는 사항 기타 재무성령으 《개정》1999 법률 160호 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제3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그 부본 3통을 《개정》 2001 법률 38호 첨부하고, 동항의 세리사회는 당해 신청서를 수리한 때는 지체 없이 당해 부본 1통씩을 당해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그리고 당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정촌(특별구 및 전부사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도도부현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등록에 관한 결정) ①**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전 《개정》 2001 법률 38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자가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가지고 또한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인정한 때 는 세리사명부에 등록하고. 당해 신청자가 세리사가 될 자 격을 갖지 않거나 또는 동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고 인정한 때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다 음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련 있는 자에 대하 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 또는 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때는 제49조의16에 규정하는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근거하 여 행하여야 한다.

- ②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당해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 지하여, 상당 기간 내에 본인이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 【칙】제12조, 제13조 명부에 등록한 때는 당해 신청자에게 세리사증표를 교부 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때는 그 이 유를 부기한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신청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를 거부하는 경우에 당해 신청자가, 세리사가 될 자격 또는

《개정》2001 법률 38호

제24조 각 호에 규정하는 등록거부사유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기재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인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의 서면에 그 뜻을 명 확히 하여야 한다.

제23조 (국가 등과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간의 통지) ① 세 무서장 그리고 시정촌 및 도도부현의 장은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세리사가 될 자격이 없거나 또는 다음 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고 인정한 때는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 청서 부본의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한 때는 그 뜻을 국세청장관 그리고 당해 신 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정촌 및 도도부현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거부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3 법률 67호 는 세리사등록을 할 수 없다.

- 1. 징계처분에 의하여 변호사, 외국법사무변호사, 공인회 계사, 변리사, 사법서사, 행정서사나 사회보험노무사의 업 무가 정지된 자 또는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 조에 규정하는 감정평가 등 업무(제43조에서 「감정평가 등 업무」이라 한다.)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불동산감정사 로서, 현재 그 처분을 받고 있는 자
- 2. 보수 있는 공직(국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직 및 비상근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취임하여 있는 자
- 3.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거 나 또는 면하려고 하거나, 또는 면하게 하거나 또는 면하 게 하려고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 과하지 않은 자
- 4.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을 받거나 또는 받으

《개정》 2004 법률 66호

려고 하거나, 또는 받게 하거나 또는 받게 하려고 한 자로 서,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국세나 지방세 또는 회계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형벌법 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 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세리사업무를 행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 7. 세리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세리사의 직책에 비추어 세리사로서의 적격성을 결여한 자

제24조의2 (등록이 거부된 경우 등의 심사청구) ① 제2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부된 자는 당해 처분 에 불복이 있는 때는 국세청장관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는 당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여도 당 해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는 당해 등록이 거부된 것으로 하여 국세청장관에 대하여 전항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가 있 은 날에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당해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심 사청구인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인 때는 국세청장관은 재결서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이유가 있는 때는 국세청장관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대하여 상 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뜻을 명하여야 한다.

제25조 (등록의 취소) ①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세리사등 《개정》1999 법률 151호 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제49조 《전개》 2001 법률 38호 의16에 규정하는 자격심사회의 의결에 근거하여 당해 등 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세리사가 될 자격 또는 제24조 각 호에 규정하는 등록

거부사유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 재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를 하여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에 근거하여 당해 등록을 한 자임이 판명된 때.

- 2. 제24조 제6호에 규정하는 자에 해당하게 된 때.
- 3.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가 불명한 때.
- ②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하나 《개정》 2001 법률 38호 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 하는 때는 그 이유을 부기한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처분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이 취소된 자에 있어서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준용하다.

제26조 (등록의 말소) ①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세리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등 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1. 그 업무를 폐지한 때.
- 2. 사망한 때.
- 3.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
- 4. 전호에 규정하는 것 외에 제4조 제2호 내지 제9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 기타 사유에 의하여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갖지 않게 된 때.

② 세리사가 전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하나에 해 【칙】제14조 당하게 된 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 체 없이 그 뜻을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 및 등록말소의 공고)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최】제14조의2 는 세리사등록을 한 때 및 당해 등록을 말소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뜻 및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보로 써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세리사증표의 반환) ① 세리사등록이 말소된 때 【최】제13조 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세리

사증표를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세리사 가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제45조나 제 46조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②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전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리사가 세리사업무를 행할 수 있게 된 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세리사증표를 그 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등록의 세목)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등록의 절차, 등록의 말소, 세리사명부, 세리사증표 기타 등록에 관한 세목에 관하여는 재무성령으로 정한다.

【칙】제8조 ~ 제14조의2 《개정》1999 법률 160호

#### 제4장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제30조 (세무대리 권한의 명시) 세리사는 세무대리를 하 는 경우에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세무관공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제31조 (특별위임을 요하는 사항) 세리사는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다음의 행위를 하는 때는 특별위임을 받아야 하다.

- 1. 불복신청의 취하
- 2. 대리인의 선임

제32조 (세리사증표의 제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세무대리에 관련한 세리사 가 세무관공서의 직원과 면접하는 때는 당해 세리사는 세 리사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칙】제12조

《개정》2001 법률 38호

제33조 (서명날인의 업무) ①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개정》2001 법률 38호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조세에 관한 신고서 등을 작성하 여 세무관공서에 제출하는 때는 당해 세무대리에 관련한 세리사는 당해 신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신고서 등이 조세의 과세표준 등에 관한 신 고서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환 급청구에 관한 서류인 때는 당해 신고서 등에는 본인(그 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단체인 때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함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세무서류의 작성을 한 때 《개정》 2001 법률 38호 는 당해 세무서류의 작성에 관련한 세리사는 당해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세리사는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을 한 때는 《개정》 2001 법률 38호 세리사라는 뜻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부기하 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날인의 유무는 당해 서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 후단의 규정은 법인세법(1965년 법률 제34호) 제151조 또는 지방세법 제72조의35의 규정(법인의 대표 자 등의 서명날인)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 여서는 안 된다.

제33조의2 (계산사항, 심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의 첨부) 【최】제14조의3

①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국세통칙법 제16조 제1항 《개정》 1999 법률 160호 제1호에 게기하는 신고납세방식 또는 지방세법 제1조 제1 《개정》 2001 법률 38호 항 제8호 또는 제11호에 게기하는 신고납부 또는 신고납 입의 방법에 의한 조세의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작성한 때는 당해 신고서의 작성에 관하여 계산, 정리 또 는 상담에 응한 사항을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②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은 전항에 규정하는 조세의 《개정》 1999 법률 160호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로서 타인이 작성한 것에 관 《개정》2001 법률 38호 하여 상담을 받고 이를 심사한 경우에 당해 신고서가 당 해 조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다고 인정한 때는 그 심사한 사항 및 당해 신고서가 당해 법령 의 규정에 따라서 작성되어 있다는 뜻을 재무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기재한 서면을 당해 신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전2항의 서면을 작성한 때 《개정》 2001 법률 38호 는 당해 서면의 작성에 관련한 세리사는 당해 서면에 세 리사라는 뜻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부기하여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조사의 통지)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조세의 《개정》 2001 법률 129호 과세표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개정》 2002 법률 152호 신고서에 관련한 조세에 관하여 미리 그 자에게 일시 장 《개정》 2004 법률 150호 소를 통지하고 그 장부서류(그 작성 또는 보존에 갈음하여 전자적 기록의 작성 또는 보존이 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당해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는 경 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는 당해 세리사에 대해서도 그 조사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의견의 청취)** ① 세무관공서의 당해 직원은 제 《추가》 2001 법률 38호 3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서면(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첨부서면」이라 한다.)이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당해 신고서에 관련한 조세 에 관하여 미리 그 자에게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그 장부 서류를 조사하는 경우에, 당해 조세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는 당해 통 지를 하기 전에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첨부서면이 첨부되어 있는 신고서에 관하여 국세통칙 《개정》 2001 법률 38호 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여야 할 경우 에, 당해 첨부서면에 기재된 바에 따라 당해 경정의 원인 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 세리사가 계산, 정리 또는 상담에 응하거나 또는 심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세무서장 (당해 경정이 국세청 또는 국세국의 당해 직원의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관 또는 국 세국장)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 신고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의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 준 등의 계산에 관하여 法令의 규정에 따르고 있지 않음 이 명백하거나 또는 그 계산에 오류가 있어서 경정을 행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국세불복심판소의 담당 심판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에 관한 불복신청에 관련한 사안에 관하여 조사 하는 경우에, 당해 불복신청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한 세리사가 있는 때는 당해 세리사에 대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무는 이들 규정에 규 《개정》 2001 법률 38호 정하는 조사에 관련한 처분, 경정 또는 불복신청에 관한 결정 또는 재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 서는 안 된다.

제36조 (탈세상담 등의 금지) 세리사는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거나, 또는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관하여 지시를 하 거나, 상담에 응하거나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7조 (신용실추행위의 금지) 세리사는 세리사의 신용 또는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38조 (비밀을 지킬 의무) 세리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세리사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 용하여서는 안 된다. 세리사를 그만 둔 후에도 또한 같다.

제39조 (회칙을 지킬 의무) 세리사는 소속세리사회 및 일 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9조의2 (연수) 세리사는 소속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 회연합회가 행하는 연수를 받고, 그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 《추가》 2001 법률 38호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사무소의 설치)** ① 세리사(세리사법인의 사원(재 《개정》 2001 법률 38호 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항에서 같다.)을 제 외한다. 다음 항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세리사법인은 세 리사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② 세리사가 두어야 하는 사무소는 세리사사무소라 칭한 《개정》 2001 법률 38호 다.

- ③ 세리사는 세리사사무소를 둘 이상 두어서는 안 된다.
- ④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사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 《추가》 2001 법률 38호 소를 두어서는 안 된다.

제41조 (장부작성의 의무) ① 세리사는 세리사업무에 관 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위촉자별로 또 건별로 세무대리, 세 무서류의 작성 또는 세무상담의 내용 및 그 전말을 기재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장부는 폐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세리사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장 《추가》 2001 법률 38호 부를 자기디스크로써 만들 수 있다.

제41조의2 (사용인 등에 대한 감독의무) 세리사는 세리사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사용하는 때 는 세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결함이 없도록 당해 사용 인 기타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41조의3 (조언의무) 세리사는 세리사업무를 행함에 있 어서 위촉자가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고 있는 사실, 부정하게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환급을 받고 있는 사실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 준 등의 계산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하거나 또는 가장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을 안 때는 즉시 그 시정을 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제42조 (업무의 제한)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최】제15조

에 종사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세리사가 된 자는 이직 후 1년간은 그 이직 전 1년 내에 근무하였던 직의 소장에 속할 사건에 관하여 세리사업무 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단,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43조 (업무의 정지) 세리사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변호 《개정》 2003 법률 67호 사, 외국법사무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사법서사, 행 《개정》 2004 법률 66호 정서사 또는 사회보험노무사의 업무가 정지된 경우 또는 부동산감정사의 감정평가 등 업무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고 있는 동안 세리사업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세리사가 보수 있는 공직에 취임하여, 그 직에 있는 동안 에도 또한 같다.

#### 제5장 세리사의 책임

제44조 (징계의 종류) 세리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다음의 세 종류로 한다.

- 1. 계고
- 2. 1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
- 3. 세리사업무의 금지

제45조 (탈세상담 등을 한 경우의 징계) ① 재무대신은 《개정》1999 법률 160호 세리사가 고의로 진정한 사실에 반하여 세무대리 또는 세 무서류의 작성을 한 때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1년 이내의 세리사업무의 정지 또는 세리 사업무의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재무대신은 세리사가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전 항에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는 계고 또는 1년 이내의 세 리사업무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제46조 (일반장계) 재무대신은,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리사가 제3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개정》1999 법률 160호

《개정》1999 법률 160호

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 또 는 이 법률 또는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위 반한 때는 제44조에 규정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47조 (징계의 절차 등)** ①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세리사 《개정》1999 법률 160호 에게 지방세에 관하여 전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는 사실 이 있다고 인정한 때는 재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소재지 그리고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② 세리사회는 그 회원에 관하여 전2조에 규정하는 행위 [영] 제6조의3 또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는 재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개정》 1999 법률 160호 회원의 성명 및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2001 법률 38호
- ③ 누구든지 세리사에 관하여 전2조에 규정하는 행위 또 《개정》 1999 법률 160호 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는 재무대신에 대하여 당해 세리사의 성명 및 그 행위 또는 사실을 통지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재무대신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의 징계처 《개정》 1999 법률 160호 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국세심의회에 자문하여 그 의결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⑤ 재무대신은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의 징계처 《개정》 1999 법률 160호 분을 하는 때는 그 리유를 부기한 서면에 의하여 그 뜻을 당해 세리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의2 (등록말소의 제한)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세 《추가》 2001 법률 38호 리사가 징계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 까지는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리사의 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제48조 (징계처분의 공고) 재무대신은 제45조 또는 제46 《개정》 1999 법률 160호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 때는 지체 없이 그 뜻 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장의2 세리사법인

**제48조의2 (설립)** 세리사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추가》 2001 법률 38호 리사법인(세리사업무를 조직적으로 행할 것을 목적으로 세 리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 립할 수 있다.

제48조의3 (명칭) 세리사법인은 그 명칭 중에 세리사법인 《추가》 2001 법률 38호 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8조의 4 (사원의 자격) ①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세리 《추가》 2001 법률 38호 사이어야 한다.

②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추가》2001 법률 38호

- 1. 제4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또는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 우에 당해 업무의 정지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 2. 제48조의20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법인이 해산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령받은 경우에 그 처분일 이전 30 일 내에 그 사원이었던 자로서 그 처분일로부터 3년(업무 의 정지를 명령받은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정지기간)을 경 과하지 않은 자

제48조의5 (업무의 범위) 세리사법인은 세리사업무를 행 《추가》 2001 법률 38호 하는 외에,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조 제2항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제48조의6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세리사법인은 제2 《추가》 2001 법률 38호 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당해 세리사법인의 사원 또는 사용인인 세리사(이 하 이 조 및 제48조의20 제4항에서 「사원 등」이라고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사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 다. 이 경우에 당해 세리사법인은 위탁자로 하여금 당해 세리사법인의 사원 등 중에서 그 보좌인을 선임시켜야 한 다.

제48조의7 (등기) ① 세리사법인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추가》 2001 법률 38호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등 《추가》 2001 법률 38호 기 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8조의8 (설립의 절차) ① 세리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추가》 2001 법률 38호 서는 그 사원이 되려고 하는 세리사가 공동으로 정관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법 (2005년 법률 제86호) 제30조 제1항의 규정 《추가》 2001 법률 38호 은 세리사법인의 정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5 법률 87호

③ 정관에는 적어도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추가》 2001 법률 38호 하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 6.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48조의9 (성립의 시기) 세리사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추가》 2001 법률 38호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8조의10 (성립의 신고 등) ① 세리사법인은 성립한 때 《추가》 2001 법률 38호 는 성립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 《개정》 2004 법률 124호 관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뜻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이하 이 장에 서 「본점소재지의 세리사회」라고 한다.)를 경유하여 일 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 《추가》 2001 법률 38호 하여 세리사법인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전항의 명부를 자기디스크로써 만들 수 있다.

제48조의11 (업무를 집행할 권한)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추가》 2001 법률 38호 모두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진다. 제48조의12 (사원의 상주) 세리사법인의 사무소에는 그 《추가》 2001 법률 38호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 회의 회원인 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 **제48조의13 (정관의 변경)** ① 세리사법인은 정관에 별도 《추가》 2005 법률 87호 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정관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세리사법인은 정관을 변경한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2 《추가》 2001 법률 38호 주간 이내에 변경에 관련한 사항을 본점소재지의 세리사 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14 (사원의 경업의 금지) ① 세리사법인의 사원 《추가》 2001 법률 38호 은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리사법인의 업무 범위 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또는 다른 세리사법인의 사원 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세리사법인의 사원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추가》 2005 법률 87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세리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 는 업무를 행한 때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당해 사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의 액은 세리사법인에 생긴 손해의 액 으로 추정한다. 제48조의15 (업무의 집행방법) 세리사법인은 세리사 아닌 《추가》 2001 법률 38호 자에게 세리사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제48조의16 (세리사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준 | 《추가》 2001 법률 38호 **용)** 제1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1조의3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에 관하

제48조의17 (법정탈퇴) 세리사법인의 사원은 다음에 게기 《추가》 2001 법률 38호

여 준용한다.

하는 이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 1. 세리사등록의 말소
- 2. 정관에 정하는 이유의 발생
- 3. 총사원의 동의
- 4. 제명

**제48조의18 (해산)** ① 세리사법인은 다음에 게기하는 이 《추가》 2001 법률 38호 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2004 법률 76호

《개정》 2005 법률 87호

- 1. 정관에 정하는 이유의 발생
- 2. 총사원의 동의
- 3. 다른 세리사법인과의 합병
- 4. 파산절차개시의 결정
- 5. 해산을 명령하는 재판
- 6. 제48조의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의 명령

② 세리사법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사원이 《추가》 2001 법률 38호 1인으로 되고, 그 1인으로 된 날로부터 계속하여 6월간 그 사원이 2인 이상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도 그 6월을 경 과한 때에 해산한다.

③ 세리사법인은 제1항 제3호의 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 《추가》 2001 법률 38호 하여 해산한 때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그 뜻을 본점소재지의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의19 (합병)** ① 세리사법인은 총사원의 동의가 있 《추가》 2001 법률 38호 는 때는 다른 세리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세리사법인 또는 합병에 의 《추가》 2001 법률 38호 하여 설립되는 세리사법인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개정》 2005 법률 87호 서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세리사법인은 합병한 때는 합병의 날로부터 2주간 이 《개정》 2004 법률 124호 내에 등기사항증명서(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세리사법인 《개정》2005 법률 87호 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의 사본)를 첨부하여 그 뜻 을 본점소재지의 세리사회를 경유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합병 후 존속하는 세리사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 《추가》 2005 법률 87호

립되는 세리사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세리사법인 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8조의19의2 (채권자의 이의 등) ① 합병을 하는 세리 《추가》 2005 법률 87호 사법인의 채권자는 당해 세리사법인에 대하여 합병에 관 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세리사법인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추가》 2005 법률 87호 관보에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자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기간은 1월을 내릴 수 없 다.

- 1. 합병을 한다는 뜻
- 2.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세리사법인 및 합병 후 존속하 는 세리사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세리사법인 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는 뜻
- ③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을 하는 세리사법인이 《추가》 2005 법률 87호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관보 외에 제6항에서 준용하 는 회사법 제9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정함에 따라 동한 제2호 또는 제3호에 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각자별 최고는 하지 않아 도 된다.

④ 채권자가 제2항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추가》 2005 법률 87호 않은 때는 당해 채권자는 당해 합병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자가 제2항 제3호의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때 《추가》 2005 법률 87호 는 합병을 하는 세리사법인은 당해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당해 채권자가 변제 를 받게 할 것을 목적으로 신탁회사 등(신탁회사 및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금융기관의 신탁업무 겸영 등에 관한 법률(1943년 법률 제43호) 제1조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을 말한다.)에 상당한 재산을 신 탁하여야 한다. 단, 당해 합병으로써 당해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는 그렇지 않다.

⑥ 회사법 제939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련한 부 《추가》 2005 법률 87호 분에 한한다.) 및 제3항. 제940조 제1항(제3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3항, 제941조, 제946조, 제947조, 제951조 제2항, 제953조 그리고 제955조의 규정은 세리 사법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 관하 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 제939조 제1항 및 제3항 중 「공고방법」은 「합병의 공고방법」으로, 동법 제946조 제3항 중 「상호」는 「명칭」으로 바꿔 읽는 것으로 한 다.

제48조의19의3 (합병무효의 소) 회사법 제828조 제1항 《추가》 2005 법률 87호 (제7호 및 제8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제7 호 및 제8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34조(제7호 및 제8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35조 제1항, 제836 조 제2항 및 제3항. 제837조 내지 제839조. 제843조(제1 항 제3호 및 제4호 그리고 제2항 단서를 제외한다.) 그리 고 제846조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 합병무효의 소에 관하 여 동법 제868조 제5항, 제870조(제15호에 관련한 부분 에 한한다.), 제873조 본문, 제875조 및 876조의 규정은 이 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843조 제4항의 신청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48조의20 (위법행위 등에 관한 처분) ① 재무대신은 세 리사법인이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 거나 또는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세리사법인에 대하여 계고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해 산을 명할 수 있다.

②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전항의 처분에 관하여 준 《추가》 2001 법률 38호 용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절차에 회부된 세리사법 《추가》 2001 법률 38호 인은 청산이 종료한 후에도 이 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 여는 당해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법인을 《추가》 2001 법률 38호 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세리사법인의 사원 등에 대 하여 제45조 또는 제46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사원 등인 세리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병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제48조의21 (민법의 준용 등) ①** 민법(1896년 법률 제89 《전개》 2005 법률 87호 호) 제50조 그리고 회사법 제600조, 제614조 내지 제619 조. 제621조 및 제622조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에 관하여, 민법 제55조 그리고 회사법 제580조 제1항, 제581조, 제 582조, 제585조 제1항 및 제4항, 제586조, 제593조, 제 595조, 제596조, 제599조, 제601조, 제605조, 제606조, 제609조 제1항 및 제2항, 제611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 다.), 제612조 그리고 제613조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 사 원에 관하여. 동법 제589조 제1항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 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자의 책임에 관하여, 동 법 제859조 내지 제862조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 사원의 제명 그리고 업무를 집행할 권리 및 대표권 소멸의 소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613조 중 「상 호」는 「명칭」으로, 동법 제615조 제1항, 제617조 제1 항 및 제2항 그리고 제618조 제1항 제2호 중 「법무성 령」은 「재무성령」으로, 동법 제617조 제3항 중 「전자 적 기록」은 「전자적 기록(세리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전자적 기록을 말한다. 다음 조 제1항 제2호 에서 같다.)」으로, 동법 제859조 제2호 중 「제594조 제 1항(제59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세리사법 제48조의14 제1항」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② 민법 제82조 및 제83조,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 《전개》 2005 법률 87호 續法)(1898년 법률 제14호) 제35조 제2항 및 제40조 그 리고 회사법 제644조(제3호를 제외한다.), 제645조 내지 제649조, 제650조 제1항 및 제2항, 제651조 제1항 및 제 2항(동법 제594조의 준용에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 652조, 제653조, 제655조 내지 제659조, 제662조 내지

제664조. 제666조 내지 제673조. 제675조, 제863조, 제 864조, 제868조 제1항, 제869조, 제870조(제2호 및 제3 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71조, 제872조(제4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74조(제1호 및 제4호에 관련 한 부분에 한한다.), 제875조 그리고 제876조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83조 중 「주무관청」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로, 회사법 제644조 제1호 중 「제641조 제5호」는 「세 리사법 제48조의18 제1항 제3호」로, 동법 제647조 제3 항 중 「제641조 제4호 또는 제7호」는 「세리사법 제48 조의18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 또는 제2항 으로, 동법 제658조 제1항 및 제669조 중 「법무성령」은 「재무성 령」으로, 동법 제668조 제1항 및 제669조 중 「제641조 제1호 내지 제3호」는 「세리사법 제48조의18 제1항 제1 호 또는 제2호 로. 동법 제670조 제3항 중 「제939조 제1항」은 「세리사법 제48조의19의2 제6항에서 준용하 는 제939조 제1항」으로, 동법 제673조 제1항 중 「제 580조」는 「세리사법 제48조의21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580조 제1항」으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③ 회사법 제824조, 제826조, 제868조 제1항, 제870조 《전개》 2005 법률 87호 (제13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71조 본문, 제872 조(제4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73조 본문, 제875 조, 제876조, 제904조 및 제937조 제1항(제3호 나목(ㅁ) 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 해산명 령에 관하여, 동법 제825조, 제868조 제1항, 제870조(제2 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71조, 제872조(제1호 및 제4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73조, 제874조(제2호 및 제3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75조, 제876조, 제905조 및 제906조의 규정은 이 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824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은 경우의 세리사법인의 재산 보전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937조 제 1항 중 「본점(제1호 사목(ㅏ)에 규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결의에 의하여 제930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 한 등기가 있는 때에 있어서는 본점 및 당해 등기에 관련

한 지점)」은 「주된 사무소 및 종된 사무소」로 바꾸어 읽는다.

④ 회사법 제828조 제1항(제1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제1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34조 (제1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35조 제1항, 제837조 내지 제839조 그리고 제846조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설립무효의 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개》2005 법률 87호

⑤ 회사법 제833조 제2항, 제834조(제21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835조 제1항, 제837조, 제838조, 제846조 및 제937조 제1항(제1호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세리사법인의 해산의 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중 「본점(제1호 사(ト)에 규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결의에 의하여 제930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에 있어서는 본점 및 당해 등기에 관련한 지점)」은 「주된 사무소 및 종된 사무소」로 바꾸어읽는다.

《전개》2005 법률 87호

⑥ 세리사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감독하는 법원은 재무 대신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거나 또는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전개》2005 법률 87호

⑦ 재무대신은 전항에 규정하는 법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개》2005 법률 87호

⑧ 파산법(2004년 법률 제75호) 제16조의 규정의 적용 에 관하여는 세리사법인은 합명회사로 본다.

《전개》2005 법률 87호

### 제6장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

제49조 (세리사회) ① 세리사는 국세국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의 세리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영】제7조

② 세리사회는 회원인 세리사의 수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관에 대하여 당해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새로이 세리사회를 설립할 수 있는 구역(이하 「지정구역」이라 한다.)을 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

【칙】제15조의2 《개정》1999 법률 160호 《개정》2001 법률 38호 다.

③ 국세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은 때는 《개정》1999 법률 160호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청구를 한 세리사 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 내에서 지정구역을 정할 수 있 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구역을 정한 때는 당해 지 [영] 제7조 정구역 내에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사무소의 등록 을 받은 세리사는 당해 지정구역에 하나의 세리사회를 설 립할 수 있다.

《개정》2001 법률 38호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세리사회가 설립된 때 는, 그 설립시에 당해 세리사회가 설립된 지정구역은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세리사회(이하 이 항에서 「전의 세리사회」라 한다.)가 설립되어 있던 구역에서 제 외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전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던 구역 중 당해 지정구역 이외의 구역은 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국세청장관이 정한 것으로 하며, 당해 전의 세리사회 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한다.

- ⑥ 세리사회는,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의 사명 및 직책을 《개정》 2001 법률 38호 감안하여,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의 의무준수 및 세리사업 무의 개선진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부(제49조의3 제1 항에 규정하는 지부를 말한다.) 및 회원에 대한 지도, 연 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⑦ 세리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⑧ 세리사회는 그 명칭 중에 세리사회라는 문자를 사용 하여야 하다.

제49조의2 (세리사회의 회칙) ① 세리사는 세리사회를 설 《개정》 1999 법률 160호 립하고자 하는 때는 회칙을 정하고, 그 회칙에 관하여 재 무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세리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 1.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 2. 입회 및 퇴회에 관한 규정
- 3. 임원에 관한 규정
- 4. 회의에 관한 규정

- 5. 세리사의 품위유지에 관한 규정
- 6. 회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
- 7. 회원의 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규정
- 8. 세리사업무에 관련하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대한 감 독에 관한 규정
- 9. 위촉자의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저렴 한 보수로 행하는 세리사 업무에 관한 규정
- 10. 회비에 관한 규정
- 11. 서무 및 회계에 관한 규정
- ③ 세리사회의 회칙변경(정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영] 제7조의2 관련하는 것에 한한다.)은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개정》 1999 법률 160호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49조의3 (세리사회의 지부) ① 세리사회는 하나의 세무 서의 관할구역마다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국세국장 의 승인을 받은 때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세무서의 관할 구역을 지구로 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부는 세리사회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 부에 소속된 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 및 감독을 행한다.

제49조의4 (성립시기) 세리사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 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9조의5 (등기) ① 세리사회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사항은 등기 후 가 아니면 이로써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49조의6 (입회 및 퇴회 등)** ① 세리사는 등록을 받은 《개정》2001 법률 38호 때에 당연히 그 등록을 받은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 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② 세리사는, 등록을 받은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 《추가》 2001 법률 38호 의 사무소를 소속세리사회 이외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에 소재지가 있는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 인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뜻의 신청을 한 때는, 그 변경등 록의 신청을 한 때에 당연히 종전의 소속세리사회를 퇴회 하고, 변경 후의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 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③ 세리사법인은 그 성립 시에 당연히 세리사법인의 주 《추가》 2001 법률 38호 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 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④ 세리사법인은, 주된 사무소 이외에 사무소를 설치하거 《추가》 2001 법률 38호 나 또는 세리사법인의 각 사무소를 각 소속세리사회 이외 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으로 이전한 때는, 세리 사법인의 사무소의 신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한 때에 당 연히 당해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⑤ 세리사법인은 그 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지에 의하여 《추가》 2001 법률 38호 소속세리사회의 구역 내에 세리사법인의 사무소를 갖지 않게 된 때는 구소재지에서 그 뜻을 등기한 때에 당연히 당해 세리사회를 퇴회한다.

⑥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은, 소속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 《개정》 2001 법률 38호 는 구역의 변경(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변 경을 포함한다.)이 있고,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소속세리사회 이외의 세리사회가 설립되 어 있는 구역에 포함된 때는, 그 구역 변경이 있은 때에 당연히 종전의 소속세리사회를 퇴회하고, 그 구역 변경 후 의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포 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⑦ 세리사는 제26조 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개정》 2001 법률 38호 때는 그 해당하게 된 때에 당해 소속세리사회를 퇴회한다.

⑧ 세리사법인은 해산한 때에 당연히 소속세리사회를 퇴 《추가》 2001 법률 38호 회하다.

⑨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은 세리사사무소 또는 세리사법 《개정》 2001 법률 38호 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세 리사회의 지부에 소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9조의7 (임원) ① 세리사회에 회장, 부회장 기타 회칙 으로 정하는 임원을 둔다.

- ② 회장은 세리사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며, 회장이 결원인 때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49조의8 (총회) ① 세리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 [영] 제8조 ~ 제10조. 여야 하다.

제12조 【칙】제15조의3

- ② 세리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 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세리사회의 회칙의 변경, 여산 및 결산은 총회의 결의 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의9 (총회의 결의 등의 보고) 세리사회는 총회의 [영] 제13조 결의 그리고 임원의 취임 및 퇴임을 재무대신에게 보고하 《개정》 1999 법률 160호 여야 한다. (1980년 법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11)

제49조의10 (분쟁의 조정) 세리사회는 회원의 업무에 관 《추가》 2001 법률 38호 한 분쟁에 관하여 회원 또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청구 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11 (건의 등)** 세리사회는 세무행정 기타 조세 또 는 세리사에 관한 제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관공서에 건 의하거나 또는 그 자문에 답신할 수 있다. (1980년 법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12, 2001년 법률 제38호 종전 제 49조의10)

제49조의12 (합병 및 해산) ① 국세국의 관할구역이 변경 됨으로써 그 구역 내에 있는 세리사회가 합병 또는 해산 할 필요가 있는 때는 그 세리사회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 여 합병 또는 해산한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세리사회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 《전개》 2005 법률 87호

하는 세리사회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세리사회의 권 리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48조의19의2의 규정은 세리사회가 합병을 하는 경 《추가》 2005 법률 87호 우에 관하여, 민법 제73조 내지 제76조, 제78조 내지 제 80조 및 제82조 그리고 민법시행법(1898년 법률 제11호) 제27조의 규정은 세리사회가 해산한 경우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④ 세리사회가 합병한 때는 합병에 의하여 해산한 세리 사회에 소속한 세리사는 당해 합병 후 존속하거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다. (1980 법 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13, 2001 법률 제38호 종전 제 49조의11 일부개정)

제49조의13 (일본세리사회연합회) ① 전국의 세리사회는 [영] 제11조 일본세리사회연합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의 사명 《개정》 2001 법률 38호 및 직책을 감안하고, 세리사 및 세리사법인의 의무 준수 및 세리사업무의 개선 진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리사 회 및 그 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또한 세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 로 한다.

- ③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세리사회는 당연히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원이 된 다.

제49조의14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 ① 일본세리사 《개정》2001 법률 38호 회연합회의 회칙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980년 법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15 일부개정, 2001 년 법률 제38호 종전 제49조의13 일부개정)

- 1. 제49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 제10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사항
- 2. 세리사의 등록에 관한 규정
- 3. 제49조의16에 규정하는 자격심사회에 관한 규정
- 4. 제41조 제1항의 장부 및 그 기재에 관한 규정

- 5. 세리사회 회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
- 6. 제49조의2 제2항 제9호에 규정하는 세리사업무의 실시 기준에 관한 규정
- ②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의 변경(전항 제2호에 게 [영] 제11조의2 기하는 사항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련한 것에 한한다.)은 재무대신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 이 발생하지 않는다. (1980 법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 15 일부개정, 2001 법률 제38호 종전 제49조의13 일부 개정)

《개정》1999 법률 160호

제49조의15 (세리사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9조의2 《개정》2001 법률 38호 제1항, 제49조의4, 제49조의5, 제49조의7 내지 제49조의 9 및 제49조의11의 규정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1961 법률 제137호 종전 제49조의15 일부개 정. 1980 법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16 일부개정. 2001 법률 제38호 종전 제49조의14 일부개정)

제49조의16 (자격심사회) ①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자격 심사회를 둔다.

- ② 자격심사회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청구에 따라 제 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나 등록의 거부 또는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자격심사회는 회장 및 위원 4인으로써 조직한다.
- ④ 회장은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장으로써 이를 맡게 하다.
- ⑤ 위원은 회장이 재무대신의 승인을 얻어 세리사, 국세 《개정》 1999 법률 160호 또는 지방세의 행정사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학식경험자 중에서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생긴 경우의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⑦ 전 각 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자격심사회의 조직 및 【영】제12조의2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80 법 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17 일부개정, 2001 법률 제38

#### 호 종전 제49조의15)

제49조의17 (총회의 결의의 취소) 재무대신은 세리사회 《개정》1999 법률 160호 또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총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그 세리사회나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회칙에 위반하거나 기 타 공익을 해치는 때는 그 결의를 취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01 법률 38호

제49조의18 (대차대조표 등) 일본세리사회연합회는 매사 《추가》 2001 법률 38호 업연도 제49조의15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제49조의 8 제3 항에 규정하는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대차대 조표 및 수지계산서를 관보에 공고하고, 또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그리고 회칙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의견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두고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일반의 열람에 제공 하여야 한다.

제49조의19 (일반적 감독) ① 재무대신은 세리사회 또는 【영】제15조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개정》1999 법률 160호 요가 있는 때는 이들 단체에 보고를 요구하고, 그 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권고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으로 하여금 이 들 단체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또는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961 법률 제137호 종전 제49조의17, 1980 법률 제26 호 종전 제49조의19, 2001 법률 제38호 종전 제49조의 17)

**제49조의20 (민법의 준용)** 민법 제44조(법인의 불법행위 《개정》2004 법률 147호 능력 등), 제50조(법인의 주소) 및 제55조(이사의 대리행 위의 위임)의 규정은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1961 법률 제137호 종전 제49조의18,

1980 법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20, 2001 법률 제38호

종전 제49조의18)

제49조의21 (정령에의 위임)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에,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의 설립, 운영, 합병,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1961 법률 제137호 종전 제49조의19, 1980 법률 제26호 종전 제49조의21 일부개정, 2001 법률 제38호 종전 제49조의19)

## 제7장 잡 칙

제50조 (임시세무서류의 작성 등) ① 국세국장(지방세에 관하여는 지방공공단체의 장)은 조세의 신고시기에 있어서, 또는 그 관할구역 내에 재해가 있은 경우 기타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고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하여, 2월 이내의 기간을 한도로 하고, 또한 조세를 지정하여, 무보수로 신고서 등의 작성 및 이와 관련한 과세표준 등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담에 응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단,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 및 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법인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33조 제2항 및 제4항, 제36조 그리고 제38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준용한다.

제51조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변호사 등) ① 변호사는 소속변호사회를 거쳐 국세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국세국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시로 세리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변호사는,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범위에 있어서, 제1조, 제30조, 제31 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1조 내지 제41조의3, 제43 조 전단, 제44조 내지 제46조(이들 규정 중 세리사업무의

【영】제14조 《개정》2001 법률 38호

【칙】제16조

《개정》2001 법률 38호

《개정》2001 법률 38호

금지처분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47조, 제48조, 제 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세리사로 본 다. 이 경우, 제33조 제3항 및 제33조의2 제3항 중 「세 리사라는 뜻 기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5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변호사라는 뜻 및 동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변호사법인의 업무로 서 동항의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으로 하다.

③ 변호사법인(변호사법에 규정하는 사원 전원이 제1항 《추가》 2001 법률 3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국장에게 통지하고 있는 법인에 한 한다.)은 소속변호사회를 거쳐 국세국장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국세국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시로 세리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변호사법 《추가》 2001 법률 38호 인은,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범위에 있어서, 제33조, 제33 조의2. 제48조의16(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 외한다.), 제48조의20(세리사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 하여는 세리사법인으로 본다.

제51조의2 (행정서사 등이 행하는 세무서류의 작성) 행정 【영】제14조의2 서사 또는 행정서사법인은 각각 행정서사 또는 행정서사 《개정》1997 법률 9호 법인의 명칭을 사용하여 타인의 요구에 응하여 골프장이 《개정》 2003 법률 131호 용세, 자동차세, 경자동차세, 자동차취득세, 사업소세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조세에 관하여 세무서류의 작성을 업으 로서 행할 수 있다.

제52조 (세리사업무의 제한)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개정》 2001 법률 38호 아닌 자는, 이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세리사업무를 행해서는 안 된다.

제53조 (명칭의 사용제한) ① 세리사가 아닌 자는 세리사 나 세리사사무소 또는 이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세리사법인이 아닌 자는 세리사법인 또는 이와 유사 《추가》 2001 법률 38호 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아닌 단체는 세리 사회나 일본세리사회연합회 또는 이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이 아닌 자 《개정》 2001 법률 38호 그리고 세리사회 및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아닌 단체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제54조 (세리사의 사용인 등의 비밀을 지킬 의무) 세리사 《개정》 2001 법률 38호 또는 세리사법인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정당한 이유 없 이 세리사업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 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 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그만두게 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55조 (감독상의 조치) ① 국세청장관은 세리사업무의 【영】제15조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는 때는 세리사 《개정》 2001 법률 38호 또는 세리사법인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당해 직원 으로 하여금 세리사 또는 세리사법인에게 질문하거나 또 는 그 업무에 관한 장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청취, 질문 또는 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제56조 삭제

**제57조 (사무의 위임)** ① 국세청장관은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국세국장 또는 세 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국세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는 것으로 한 때는 그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장 벌 칙

**제58조** 제36조(제48조의16 또는 제50조 제2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제59조 ①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2001 법률 38호

- 1.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갖지 않은 자로서, 일본세리사회연 합회에 대하여 그 자격에 관하여 허위의 신청을 하여 세 리사명부에 등록하게 한 자
- 2. 제38조(제5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② 전항 제2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추가》 2001 법률 38호

제60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円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 1.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45조나 제46조 또는 제48조의20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세리사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에 위반 하여 세리사업무를 행한 자

제61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円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1 법률 38호

- 1.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3.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62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円 이하 《전개》 2004 법률 87호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2005 법률 87호

1. 제48조의19의2 제6항(제49조의1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95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조사기록부 등에 동항 에 규정하는 전자공고조사에 관하여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의 기재나 기록을 하거나, 또는 당해 조사기록부 등을 보 존하지 않은 자

2. 제49조의19 제1항 또는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질문 또는 검사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고,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기타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제59조 제1항 제3호, 제60조 제3호(제48조의20 제1항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61조 또는 전조의 위 반행위를 한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4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円 이 《전개》 2005 법률 87호 하의 과료에 처한다.

- 1. 제48조의19의2 제6항(제49조의1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에서 준용하는 회사 법 제946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 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2.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제48조의19의2 제6항에서 준 용하는 회사법 제951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955조 제2항 각 호에 게기하는 청구를 거부한 자

제65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리사법 《전개》 2005 법률 87호 인의 사원이나 청산인 또는 세리사회나 일본세리사회연합 회의 임원은 3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이 법률에 근거한 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기를 할

것을 게을리 한 때.

- 2. 제48조의19의2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병을 한 때.
- 3. 제48조의19의2 제6항(제49조의12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941조의 규정 에 위반하여 동조의 조사를 요구하지 않은 때.
- 4. 정관 또는 제48조의21 제1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615조 제1항의 회계장부 또는 제48조의21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617조 제1항이나 제2항의 대차대조표에기재하거나 또는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또는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의 기재나 기록을 한 때. 5. 제48조의21 제2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65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을 게을리 한때
- 6. 제48조의21 제2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66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을 분배한 때.
- 7. 제48조의21 제2항에서 준용하는 회사법 제670조 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때.

# 부 칙

- 1.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1월을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 2. 세무대리사법은 폐지한다. 단,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사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간은 계속 그 효력이 있으며, 그기간만료일까지 동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자에대하여는 1952년 3월 31일까지 계속 그 효력이 있다.
- 3. 세무대리사법의 폐지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 4. 다음에 게기하는 자(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인 자를 제외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단, 이들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30시간 이상의 세법에 관한 강습 또는 연수를 거친 후가 아니면 세리사등록을 받을 수없다.

- 1. 이 법률 시행 당시 현재 구 세무대리사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사의 허가를 받은 자
-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구세무대리사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사의 허가를 받은 자
- 5. 이 법률 시행 당시 현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인 자로서, 오로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 또는 오로지 지방세의 부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각각 통산하여 15년 또는 20년 이상이 되는 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세법 및 회계학에 관하여 세리사시험의 합격자와 동등 이상의 학식을 갖는다는 뜻의 시험위원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갖는 것으로 한다.
- 6. 전항에 규정하는 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는 이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 월 이내에 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인정을 시험위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7. 시험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한 때 또는 그 인정을 하지 않은 때 는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8. 1951년 6월 30일 이전에 실시된 공인회계사 제3차시험 또는 특별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정령으로 정하는 30시간 이상의 세법에 관한 강습 또는 연수를 거친 후가 아니면 세리사등록을 받을 수 없다.
- 9.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관하여는 이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월간(그 기간 내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당해 신청에 근거하여 세리사등록을 받은 날 또는 당해 신청의 각하처분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이 법률 시행일에 세리사가 된 것으로 보

- 아 이 법률의 규정(세리사등록 및 세리사증표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들이 이 법률 시행 당시 현재 세리사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둘 이상 설치하고 있는 때는 이 법률 시행일에 그 설치에 관하여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의 의한 국세청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 제4항 제1호에 게기하는 자
- 2. 이 법률 시행 당시 현재 세무대리업을 행하고 있는 변호사
- 3. 이 법률 시행 당시 현재 구세무대리사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사의 허가를 받은 공인회계사
- 10. 전항 전단의 규정은 제4항 제2호에 게기하는 자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전항 전단 중 「이 법률 시행일」은 「구세무대리사법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사의 허가를 받은 날」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 11. 전2항의 규정은 제4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 12. 구세무대리사법에 근거한 세무대리사회는 이 법률 시행일에 제49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무를 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된 것으로 한다.
- 13. 전항의 법인(이하 「구세무대리사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구세무대리사법 및 구세무대리사법 법시행규칙(1942년 대장성령 제13호)의 규정(국세청장관및 국세국장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의 예에 따른다. 단, 구세무대리사회의 회원은 동회를 퇴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세리사는 새로 동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14. 구세무대리사회의 회원이 동회를 퇴회한 경우의 그 퇴회한 자에 대한 재산의 분여에 관하여는 이 법률 시행 당시 현재 동회의 회원인 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는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5. 구세무대리사회는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리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16. 구세무대리사회는 법인세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는 동법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본다.

- 17. 구세무대리사회는 그 조직을 변경하여 세리사회가 될 수 있다.
- 18. 구세무대리사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그 조직을 변경하여 세리사회가 되려면 이 법률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는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대장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정관에 관하여 대장대신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9. 대장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근거하여 그인가를 한 때 또는 그 인가를 하지 않은 때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20.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은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대신의 인가로 인하여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1.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이 그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대신의 인가로써 세리사회의 설립허가로 보아 民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동법 및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續法: 1956년 법률 제1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22. 구세무대리사회는, 제18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정관인가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당해 인가의 신청을 하였으나 그 인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만료일 또는 그 인가를 하지 않은 뜻의 통지를 받은날에 해산한다.
- 23.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무대리사회가 해산한 때는 회장이 그 청산인이 된다. 단, 회장이 결원인 때 또는 회 장에게 사고가 있는 때는 부회장이 그 청산인이 된다.
- 24.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때, 또는 청산인이 결원이 된 때 또는 청산인에게 사고가 생긴때는 총회가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 25. 구세무대리사회의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써 하는 결의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다.
- 26. 구세무대리사회의 청산은 국세청장관이 감독한다.
- 27. 민법 제73조, 제78조 내지 제80조, 제83조 및 제84

조 제6호(동법 제79조의 공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법인의 청산)은 구세무대리사회의 청산에 준용한다.

- 28. 당분간, 제4조 제5호 중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1950년 법률 제226호) 또는 구지방세법(1948년 법률 제110호)(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서 구지방세법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바꾸어 읽는다.
- 29. 1951년 및 1952년에 실시한 세리사시험에 관하여는 제6조 제1호 중 「지방세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은 「지방세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 또는 사업세(특별소득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부분」으로 바꾸어 읽는다. 30. 1981년 4월 1일부터 1986년 3월 31일까지 사이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시험 외에 특별한 세리사시험을 행한다.
- 31.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시험을 치를 수 있다.
- 1. 관공서에서의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만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20년 이상이고 정령으로 정하는 사무의 구분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연수(年數) 이상이 되는자
- 2. 계리사 또는 회계사보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이 되는 자
- 32. 제30항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시험은 세리사심사회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또는 회계에 관한 실 무에 관하여 행한다.
- 33. 제30항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시험의 합격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험성적에 따르는 외에, 수험자의 제3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사무 또는 업무에 종사한 연수(年數)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 34. 제30항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시험은 제3조 제1항 및 제48조의5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시험으로 본다.
- **35.** 제9조의 규정은 제30항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시험에 관하여 준용한다.

36. 전5항에 정하는 것 외에, 제30항의 규정에 의한 세리 사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장성령으로 정 한다.

#### 부 칙(抄)

(1952년 6월 28일 법률 제216호)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입장세, 유흥음식세 및 전기가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53년 4월 1일까지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특별징수에 관련한 전기가스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 이후에 수납할 요금에 관련한 분)부터, 시정촌민세에 관한 개정규정 중 법인세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195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광고세 및 접객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1952년 7월 1일부터, 기타 개정규정은 1952년도분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이 경우 연세(年稅) 또는 기세(期稅)인 광고세 및 접객인세에 있어서는 1952년 6월까지 월할로써 과하는 것으로한다.

#### 부 칙(抄)

(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62호)

1. 이 법률은 자치청설치법(1952년 법률 제261호) 시행일 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53년 8월 1일 법률 제164호)

- 1. 이 법률은 195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1. 1952년분 이전의 부유세에 관하여는 개정 전 소득세

법 제10조 제3항, 개정 전 상속세법 제14조 제2항, 개정 전 조세특별조치법 제8조, 개정 전 재해피해자에대한조세 의감면,징수유예등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10조, 개정 전 일본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안전보장조약제3조에근거한행 정협정의실시에따른소득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6 조 및 개정 전 세리사법 제35조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 부 칙(抄)

(1953년 8월 1일 법률 제165호)

1. 이 법률은 195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54년 5월 13일 법률 제95호)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55년 8월 10일 법률 제155호)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56년 6월 30일 법률 제165호)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1조의2 및 제5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4월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직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11. 신세리사회 또는 일본세리사회연합회가 구세리사회 또는 세리사회연합회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서 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12. 도도부현(都道府県)은 신세리사회 또는 일본세리사회 연합회가 구세리사회 또는 세리사회연합회로부터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에서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에 대 하여는 부동산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1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따른다.

### 부 칙(抄)

(1960년 6월 30일 법률 제113호)

**제1조 (施行期日)** 이 법률은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61년 6월 15일 법률 제137호)

-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 제1 항, 제4조 제5호, 제5조, 제8조, 제24조, 부칙 제30항, 부 칙 제31항 및 부칙 제34항의 개정규정 그리고 부칙 제9 항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제36조의 개정규정은 동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개정 후의 세리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4조 제7호 및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개정 전의 세리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라 세리사등록이 취소된 자는, 신법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에 따라 세리사업무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자로 본다.

- 3. 신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의 등록신청이 각하된 자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의 등록이 거부된 자로 본다.
- 4.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관에게 제출한 등록신청서 기타 세리사의 등록에 관한 서류는 이 법률의 시행일 (이하 「시행일」이라 한다.)에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세리사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5. 구법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명부의 등록은 시행일 이후 에는 신법의 규정에 의한 세리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 6. 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관이 교부한 세리사증표 는 시행일 이후에는 신법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가 교부 한 세리사증표로 본다.
- 7. 구법 제22조 제1항 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에 있어서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서의 소원(訴願)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따른 다.
- 8. 국세청장관은 시행일에 있어서 국세청에 비치한 세리사 명부 기타 세리사의 등록에 관한 서류를 연합회에 인계하 여야 한다.
- 9. 연합회는 이 법률의 공포일 이후 지체 없이 회칙의 변경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행하여야 한다.

# 부 칙(抄)

(1961년 6월 1일 법률 제145호)

이 법률은 학교교육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1961년 법률 제144호)의 시행일[1961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62년 4월 2일 법률 제67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 후의 세리사법 제2조 제1호, 제31조 제1호 그리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국세통칙법 부칙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세법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되는 재조사의 청구나 심사의청구 또는 심사의 결정은 각각 불복신청 또는 불복신청에 관한 결정이나 재결로 본다.

### 부 칙(抄)

(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 1. 이 법률은 196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 어진 행정청의 처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신청 과 관련한 행정청의 부작위 기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 생한 사항에 관하여도 적용한다. 단,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
-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기타 불복신청(이하 「소원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소원 등의 재결, 결정 기타 처분(이하 「재결 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등에 관하여 이 법률의 시행후에 이루어진 재결 등에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의 소원

등에 대하여도 같다.

- 4. 전항에 규정하는 소원 등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처분과 관련하는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으로 본다.
-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청 기타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관하여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 6.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 등을 할수 있는 것으로 되고 또한 그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 8.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 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9. 전8항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에 시행에 관하여 필 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 칙(抄)

(1965년 3월 31일 법률 제36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6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기타 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의 원칙)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법령의 규정은,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1965년분 이후의 소득세 또는 이들 법령의 규정에 규정하는 법인의 시행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에 관하여 적용하고, 1964년분 이전의 소득세 또는 당해 법인의 동일 전에 종료한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세리사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규정하는 환급청구에 관한 서류, 동법 제3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관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동법 제34조에 규정하는 신고서는 당해 개정 후의 세리사법 제33조 제1항 후단, 제33조의 제1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서류 또는 신고서로 본다.

#### 부 칙(抄)

(1966년 6월 23일 법률 제85호)

1. (시행기일) 이 법률 중 제1조 및 다음 항 내지 부칙 제 21항의 규정은 公布日[1966년 6월 23일]부터 기산하여 10일을 경과한 날부터, 제2조 및 부칙 제22항 내지 제25 항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9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67년 6월 12일 법률 제36호)

1. 이 법률은 등록면허세법의 시행일[196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68년 4월 20일 법률 제21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公布日[196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70년 3월 28일 법률 제8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7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71년 6월 4일 법률 제101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 중 다음 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공포일부터, 제1조, 다음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 그리고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일[1971년 6월 4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1971년 12월 1일]부터, 제2조,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제1조의 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197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 개정에 따른 과계병률의 일

제5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에 따른 관계법률의 일 부개정) ① (생략)

- ② 세리사법(1951년 법률 제23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이하 생략)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사법서사법 제3조 제5호 및 세리사법 제4조 제8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등록취소는 신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업무금지로 본다.

# 부 칙(抄)

(1978년 6월 23일 법률 제82호)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세리사법 제4조 제8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인 사법서사의 인가취소처분은 신법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인 사법서사의 등록취소

로 본다.

## 부 칙(抄)

(1980년 4월 14일 법률 제26호)

- 1. 이 법률은 공포일[1980년 4월 14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198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목차의 개정규정(「제49조의21」을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4조 제7호의 개정규정, 제5조의 개정규정 (동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6조의 개 정규정, 제8조 제1항의 개정규정(동항에 2호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제7호」 를 「제8호 또는 제9호」로 개정하는 부분 중 「제8호」 와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10조 및 제12조 제1항의 개정규정, 제13조의 개정규정(「제8조 제1항 제10호의 규 정에 의한 지정을 포함한다.) 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다.),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8조 제1항 및 제45조의 개 정규정, 제46조의 개정규정(「국세청장관은 전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 및 동조 제2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제5장의 다음에 1장을 추가하는 개정규정(제48조의2의 규정 중 「그리고 제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관 련한 부분을 제외한다.), 제49조의12의 개정규정(동조 제2 항을 삭제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61조 제4호의 개정규정 (동호를 동조 제3호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부칙 제30항, 제32항 및 제34항의 개정규정 그리고 부칙 제30 항 및 제31항의 규정 1981년 4월 1일
- 2. 제8조 제1항에 2호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제7호」를 「제8호 또는 제9호」로 개정하는 부분 중「또는 제9호」와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제13조의 개정규정(「제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포함한다.」와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5장다음에 1장을 추가하는 개정규정(제48조의2의 규정 중「그리고 제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 1982년 4월 1일

- 2. 개정 전의 세리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들을 개정 후의 세리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신법 제4조 제7호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신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 에 관하여 적용하고, 동일 전에 구법 제45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 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4. 신법 제4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구법 제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5. 신법 제4조 제10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세리사의 등록이 거부된 자 또는 세리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세리사의 등록이 거부된 자 또는 세리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6. 1981년 4월 1일 전에 계리사 업무의 보조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갖는 자와 관련한 세리사시험의 수험자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7. 1981년 4월 1일 전에 계리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갖는 자 및 부유세의 부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갖는 자와 관련한 세리사시험에서의 일부과목의 시험 면제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8. 신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록신청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등록 신청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9. 신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신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 관하여 적용하고, 구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10. 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관련한 사무소 명칭의 등록에 관하여는시행일(시행일 이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된 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세리사명부에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을 받은 날)에등록을 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신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11. 신법 제24조 제1호 및 제43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구법 제24조 제1호 또는 제43조에 규정하는 처분을 받은 자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의한다.
- 12. 신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세리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세리사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13. 신법 제2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징계처분에 의하여 세리사업무가 정지된 경우에 관하여 적용하고, 동일 전에 징계처분에 의하여 세리사업무가 정지된 경우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14. 시행일 전에 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관공 서에 제출된 서면은 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으로 보아 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15. 시행일 전에 구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면은 신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신고서에 첨부한 서면으로 보아 신법 제35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

용한다.

- 16. 시행일 전에 구법 제4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세리사의 당해 허가에 관련한 세리사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에 관하여는 신법 제40조 제3항의 규 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17. 국세청장관은 전항에 규정하는 세리사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에 관하여 이를 설치할 특별한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는 그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 18. 신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동항에 규정하는 장부의 기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구법 제41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다.
- 19. 신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48조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신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하고, 동일 전에 구법 제45조 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20. 신법 제49조의6 제1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신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 또는 부칙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구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 21. 세리사로서 시행일 전일에 그 자의 세리사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었던 자는 시행일에 신법 제49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의 세리사회 회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 22. 세리사로서 시행일에 그 자의 세리사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당해 세리사회에 입회신고서를 제출하여 당해 세리사회의 회원 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당해 6월을 경과하는 날까지 당해 세리사회의 회원이 되지 않은 때(부칙 제16항에 규 정하는 사무소를 갖는 세리사가 당해 사무소 소재지 포함 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되지 않은

때를 제외한다.)는 그 익일에 신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23. 세리사로서 시행일에 그 자의 세리사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립되어 있는 세리사회의 회원이 아닌자가 시행일 전에 구법 제51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변호사인 세리사 또는 공인회계사인 세리사인 경우에서의 전항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동항 중 「6월」은 「3년」으로 바꾸어 읽는다.
- 24. 전항의 규정하는 공인회계사인 세리사(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꾸어 읽어서 적용되는 부칙 제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리사회의 회원이 된 자를 제외한다.)가 행하고자하는 세리사업무에 관하여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구법 제51조의2의 규정은 계속하여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에는 신법 제52조의 규정 중「세리사가 아닌 자는 이 법률」은 「세리사회에 입회한세리사가 아닌 자는 이 법률 및 세리사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1980년 법률 제26호)」로 한다.
- 25. 세리사가 아닌 자로서 시행일에 세리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 관하여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월을 경과하는 날까지는 신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26. 시행일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27. 신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은 1981년 4월 1일 이후에 받은 신법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련한 동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하고, 동일 전에 받은 구법 제45조 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관련한 구법 제61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시행일 전에 한 것을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29.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세리사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부칙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동법부칙 제4항에 규정하는 신세리사회로서 시행일 현재 존재하는 것은, 재무성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신법 제49조 제1

항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아, 신법 그리고 부칙 제21항 및 제2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抄)

(1981년 6월 2일 법률 제64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1981년 6월 2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198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세리사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처분은 사회보험노무사의 실격처분의 처분으로 본다.

## 부 칙(抄)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 1. 이 법률(제1조를 제외한다.)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 행한다.
- 2. 이 법률의 시행일 전날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기관 등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 또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법률의규정에 근거한 정령(이하 「관계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抄)

(1985년 6월 28일 법률 제86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1985년 6월 28일]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고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198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세리사법 제4조 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구사법서사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의 처분은, 신사법서사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금지의 처분으로 본다.

#### 부 칙(抄)

(1986년 5월 23일 법률 제66호)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1986년 5월 23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08호)

- 제1조 (시행기일 등) ①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며, 1989년 4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 및 동일 이후에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과세구입 그리고 동일 이후에 보세지역에서 인취하는 외국화물에 관련한 소비세에 관하여 적용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률 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 (생략)
- 2. 부칙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27 조 내지 제29조, 제31조 내지 제45조, 제46조(관세법 제

24조 제3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부칙 제48조 내지 제51조, 제52조(수입품에대한내국소비세의징수등에 관한법률 제14조를 삭제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그리 고 부칙 제53조 내지 제67조의 규정 1989년 4월 1 일

제38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통행세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전의 세리사법 제2조 제1항(세리사의 업무)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 ② 전조의 규정의 시행 전에 물품세법에 관하여 세리사법 제7조 제1항(시험과목의 일부면제)에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로서 동항에 규정하는 신청을 행하는 자에 대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동법 제6조제1호(시험목적 및 시험과목)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호 라목(二) 중 「또는 주세법」은 「, 주세법 또는 물품세법」으로 한다.
- ③ 적용일에 있어서 물품세의 부과 또는 물품세에 관한 법률의 입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갖은 者에 대 한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세리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시험과목의 일부면제)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동 호 중 「또는 주세」는 「, 주세 또는 물품세」로, 「기 간」은 「기간(물품세에 관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기간에 관하여는 1989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한한다.)」으로 한다.

# 부 칙(抄)

(1988년 12월 30일 법률 제110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종전

의 예에 의하게 되는 오락시설이용세 및 요리음식등소비세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세리사법제51조의2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그 효력을 갖는다.

#### 부 칙(抄)

(1991년 5월 15일 법률 제73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行政手續法)(1993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문 등이 이루어진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회 기타 합의제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청문 또는 변명을 부여하는 절차 기타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에상당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자문 기타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자문 기타 요구에 관련한 불이익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법률의 규정에 관계없이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 (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청문(聽聞), 청문(聽問)이나 청문회(聽聞會)(불이익처분에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를 위한 절차는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관계법률의 상당하는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5조 (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 칙(抄)

(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1995년 5월 12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1997년 3월 28일 법률 제9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되는 특별지방소비세에 관하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세리사법 제51조의2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의 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 부 칙(抄)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50조 (검토) 신지방자치법 제2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관하여는 가능한 한 새로 설

정하는 것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신지방자치법 별표 제1 호에 게기하는 것 및 신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정령으로 제 시하는 것에 관하여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 토를 가하여 적당하고 적절한 재검토를 행하는 것으로 한 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와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세재원의 충실한 확보방안에 관하여,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면서 검토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개혁에 따라, 사회보험의 사무처리체제,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존재 방식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 등의 편리성 확보, 사무처리의 효율화 등의 시점에 서서검토 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소요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부 칙(抄)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내각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 (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규정은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10조 제1항 및 제5항, 제14조 제3항, 제23조, 제28조 그리고 제30조의 규정 공포일

제3조 (직원의 신분승계) 이 법률 시행 당시 현재 종전의 총리부,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또는 자치성(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부성」이라 한다.)의 직원(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 제8조의 심의회등의 회장 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앙방재회의의 위원,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회장 및 위원 그리고 이에 유사한 자

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인 자는 별도로발령 되지 않는 한,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이 법률 시행 후의 내 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 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이나 환경성(이 하 이 조에서 「신부성」이라 한다.) 또는 이에 설치되는 부국이나 기관 중, 이 법률의 시행 당시 현재 당해 직원이 속하는 종전의 부성 또는 이에 설치되는 부국이나 기관에 상당하는 신부성 또는 이에 설치되는 부국이나 기관으로 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상당하는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 (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제2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로 하는 경과조치는 별도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59조 (세리사법의 일부 개정)** 세리사법(1951년 법률 제 237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차 중 「제5장의2 세리사심사회(제48조의2 내지 제48 조의10)」를 삭제한다. 제5장의2를 삭제한다.

## 부 칙(抄)

(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抄)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2000년 4월 26일 법률 제49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구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금지 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의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의 세리사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리사가 될 자격을 갖지 않는다.

#### 부 칙(抄)

(2001년 6월 1일 법률 제38호)

- 1. 이 법률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법률의 시행의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개정 전의 세리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구세무대리사법(1942년 법률 제46호)의 규정에 의하여 형에 처한 자에 관련한 세리사의 자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3. 시행일 전에 구법 제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구대학령(1918년 칙령 제388호), 구고등학교령(1918년 칙령 제389호) 또는 구전문학교령(1903년 칙령 제6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 고등전문학교, 대학예과, 고등학교고등과나 전문학교 또는 정령으로 정하는 이들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수료한 자로서, 이들 학교에서 법률학 또는 경제학을 이수한 자 및 구법 제5조 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고등시험 본시험(本試驗)에 합격한 자에 관련한 세리사시험의 수험자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종전의 예에 의한다.

- 4. 개정 후의 세리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석사(修士)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교교육법 (1947년 법률 제26호) 제104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대학원과정(동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하는 대학원에 상당하는 교육을 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진학하는 자에 관하여 적용한다.
- 5. 신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들 호에 규정하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자에 관련한 부분에 한한다.)은 시행일 이후에 이들 규정에 규정하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에 진학하는 자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에 진학한 자에 관련한 세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면제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6. 시행일 전에 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규정하는 교수, 조교수 또는 강사 중 어느 직에 취임한자에 관련한 세리사시험의 시험과목 면제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7. 시행일 전에 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관공서에 제출된 서면은 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으로 보아 신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8. 신법 제35조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한다.
- 9. 신법 제49조의6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세리사사무소를 소속 세리사회 이외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세리사사무소를 소속 세리사회 이외의 세리사회가 설립되어 있는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10. 신법 제49조의18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와 관련한 서류에 관하여 적용한다.
- 11. 이 법률의 시행 당시 현재 구법 부칙 제37항의 허가를 받은 공인회계사가 시행일부터 계속하여 행하는 세리 사업무에 관하여는 동항 내지 구법 부칙 제44항의 규정은

계속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구법 부칙 제37항 중 「당분간」은「2005년 3월 31일까지」로 바꾸어 읽는 것으로 한다.

12. 부칙 제2항 내지 전항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 칙(抄)

(2001년 11월 28일 법률 제129호)

-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되는 경우에서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抄)

(2002년 11월 29일 법률 제118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2002년 12월 6일 법률 제138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규정은 각각 당해 각 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그리고 부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제8조 내지 제10조 그리고 제19조 내지 제28조의 규정 2005년
12월 1일

제22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구법의 규정에 의한 사법시험 제2차시험 또는 구사법시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관련한 세리사시험의 수험자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抄)

(2002년 12월 13일 법률 제152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절차등에서의정보통신기 술의이용에관한법률(行政手續等における情報通信の技術の利用に關する法律)(2002년 법률 제151호)의 시행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전3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 령으로 정한다.

## 부 칙(抄)

(2003년 6월 6일 법률 제67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제2조, 다음 조, 부칙 제3조, 부칙 제5조, 부칙 제6조, 부칙 제8조 내지 제10조, 부칙 제30조, 부칙 제32조, 부칙 제36조 내지 제45조, 부칙 제47조, 부칙 제50조, 부칙 제52조 및 부칙 제53조(금융청설치법(1998년 법률 제130호) 제4조 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8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조

규정의 시행의 날 이후로 회계사보인 자에 관련한 세리사의 결격조항, 세리사의 등록거부사유 및 세리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 제2조 규정의 시행의 날 이후로 회계사보(회계사보가 될 자격을 갖는 자를 포함한다.)인 자에 관련한 세리사시 험의 수험자격 및 세리사시험의 면제에 관하여는 계속하 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그리고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경우에서의 이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5조 (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제30조, 부칙 제33조, 부칙 제38조, 부칙 제40조, 부칙 제43조, 부칙 제45조 및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 칙(抄)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131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2004년 6월 2일 법률 제66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4조, 다음 조 그리고 부칙 제6조 내지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20조 내지 제23

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세리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부동산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감정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부동산의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이 금지된 부동산감정사 또는 부동산감정사보에 관련한 세리사의 등록거부사유 및 세리사의업무정지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 제4조 규정의 시행의 날 이후에 부동산감정사보인 자에 관련한 세리사의 결격조항, 세리사의 등록거부사유 및 세리사의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당해 규정. 이하 이 조에서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그리고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그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경우에서의 이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29조 (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및 전조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 칙(抄)

(2004년 6월 2일 법률 제76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파산법(2004년 법률 제75호. 다음 조 제8항 그리고 부칙 제3조 제8항, 제5조 제8항, 제16항 및 제21항, 제8조 제3항 그리고 제13조에서 「신 파산법」이라 한다.)의 시행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 (정령에의 위임) 부칙 제2조 내지 전조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 부 칙(抄)

(2004년 6월 9일 법률 제87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전조에서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경우에서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 칙(抄)

(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4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신부동산등기법의 시행의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의 날이 행정기관이보유하는개인정보의보호에관한법률의 시행의 날 후인 경우에는 제52조 중 상업등기법 제114조의3 및 제117조 내지제119조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의3」은 「제114조의4」로 한다.

## 부 칙(抄)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50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의한다.

#### 부 칙(抄)

(2004년 12월 3일 법률 제154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시행한다.

제121조 (처분 등의 효력) 이 법률의 시행 전의 각각의 법률(이에 근거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규정으로 인하여 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서,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개정 후의 각각의 법률의 상당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12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행위 그리고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는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그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서의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3조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24조 (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관하여 검토를 가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소요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한다.

#### 부 칙(抄)

(2005년 7월 15일 법률 제83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68조의2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 그리고 부칙 제3조, 제6조, 제7조(세리사법(1951년 법률 제237호) 제8조 제1항 제1호 중 「제6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제68조의2 제4항 제2호」로 고치는 개정규정에한한다.),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의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抄)

(2006년 6월 2일 법률 제50호)

- 1. (시행기일) 이 법률은 일반사단 · 재단법인법의 시행의 날부터 시행한다.
- 2. (조정규정) 범죄의국제화및조직화그리고정보처리의고도 화에대처하기위한형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犯罪の國際 化及び組織化並びに情報處理の高度化に對處するための刑 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2006년 법률 제 호)의 시행

의 날이 시행일 후가 되는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동법의 시행의 날의 전일까지의 조직적인범죄의대처및범죄수익의 규제등에관한법률(組織的な犯罪の處罰及び犯罪收益の規制 等に關する法律)(1999년 법률 제136호. 다음 항에서 「조 직적 범죄처벌법」이라 한다.) 별표 제62호의 규정의 적용 에 관하여는 동호 중 「중간법인법(2001년 법률 제49호)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는 「일반사단법인및 일반재단법인에관한법률(一般社團法人及び一般財團法人に 關する法律)(2007년 법률 제48호) 제334조(이사 등의 특 별배임)의 죄」로 한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것 외에, 동항의 경우에 범죄의국제화 및조직화그리고정보처리의고도화에대처하기위한형법등의 일부를개정하는법률의 시행의 날의 전일까지의 조직적 범죄처벌법의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4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종전의 예에 의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서의 구중간법인법 제157조(이사 등의 특별배임)의 죄는 조직적 범죄처벌법 별표 제62호에 게기하는 죄로 본다.

## 부 칙(抄)

(2007년 6월 27일 법률 제96호)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부터 기산하여 6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